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인도네시아 공화국(Republic of Indonesia)
2. 수도 : 자카르타(Jakarta, 1,046만명)
3. 인구・면적 : 27,020만명(2020년), 1,904,569㎢(한반도의 약 9배)
4. 공용어 : 인도네시아어(Bahasa Indonesia)
5. 1인당 GDP : 3,921달러(2020년)
6. 독립일 : 1945. 8. 17.(네덜란드로부터)
7. 정부형태 및 의회 : 대통령중심제, 양원제

1. 명칭 : 헌법재판소

❍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2. 연혁

❍ 2001. 11. 9. 제3차 헌법 개정(헌법재판소 설립 근거 마련)
❍ 2002. 10. 1. 제4차 헌법 개정(헌법재판소 설립 준비기간 동안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맡도록 함)
❍ 2003. 8. 13. 헌법재판소법 제정
❍ 2003. 8. 15. 헌법재판관 최초 임명
❍ 2003. 10. 15. 대법원으로부터 심판사건을 인수하여 활동 시작
❍ 2020. 9. 29. 제3차 헌법재판소법 개정

3. 구성(헌법 제24C조, 헌법재판소법 제4조, 제15조)

❍ 헌법재판소장 1인, 부소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
❍ 재판관은 국회(House of Representatives), 대통령, 대법원이 각각 3인을 지명하고, 모두 대통령이 임명

○ 재판관의 임기는 5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고 정년은 70세
○ 헌법재판소장과 부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5년이고, 1회에 한하여 재임이 가능
○ 재판관 자격 : 임명시 55세 이상인 인도네시아 국민 중에서 법학을 전공(학사)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있는, 15년 이상 법률분야에서 일하였거나 국가공무원이었던 자. 단, 법원판결에 따라 복역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파산선고를 받지 않은 자이어야 함

4. 권한(헌법 제24C조)

○ 위헌법률심판(헌법재판소법 제50조 - 제60조)
  - 특정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권리/권한이 침해되었다는 청구인의 제청에 대해 심판
  -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의 제정에 의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인도네시아 국민인 개인, 관습법상 공동체, 공·사법인 및 국가기관이 청구할 수 있음.
○ 권한쟁의심판(헌법재판소법 제61조 - 제67조)
  -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한이 다른 국가기관으로 인해 훼손되었다고 여기는 국가기관의 청구에 대해 심판
○ 정당해산심판(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73조)
  - 정당의 이념과 원칙, 목표, 강령,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여기는 정부의 청구에 대해 심판
○ 선거소송(헌법재판소법 제74조 - 제79조)
  -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적으로 실시한 총선거 결과의 확정을 다투는 절차
○ 대통령 및 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헌법재판소법 제80조 - 제85조)
  - ① 대통령/부통령이 국가반역죄나 부패, 뇌물 수수, 기타 중대한 범죄행위, 부정행위 등의 위법을 저질렀거나 ② 대통령/부통령이 헌법에 따른 자격조건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다는 혐의가 있는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이에 대해 결정

5. 심리 및 결정

- ❍ 청구인은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청구취지, 청구이유, 증거 등을 기재한 청구서 부본 12부를 제출하여 심판을 청구하여야 함
- ❍ 위헌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
- ❍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
- ❍ 선거소송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결과를 공포한지 72시간 이내에 결과에 불복하는 후보자와 정당이 청구하며, 접수일 기준으로 대통령 선거는 14일 이내, 기타 선거는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함
- ❍ 헌법재판소 심판사무처는 접수된 청구서를 심사하여 등록부에 기재하고 흠결시 보정명령을 내림(청구인은 7일 이내에 보정하여야 함)(헌법재판소법 제32조)
- ❍ 사전심사를 위해 재판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panel)를 설치(헌법재판소법 제28조 제4항)
- ❍ 심리 및 결정은 원칙적으로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재판부(plenary session)에서 실시(헌법재판소법 제28조 제1항)
- ❍ 사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첫 변론일을 결정하며, 이를 사건당사자와 일반인에게 공고함(헌법재판소법 제34조)
- ❍ 변론은 일반인에게 공개하며 당사자, 증인, 감정인을 소환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심리를 진행함(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41조)
- ❍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은 두 가지 이상의 증거에 근거해야 함(헌법재판소법 제45조 제2항)
- ❍ 결정은 전원재판부에서 재판관의 합의(consensus)에 의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차기 전원재판부 회의까지 연기되며, 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표결을 통하여 결정함(헌법재판소법 제45조 제4항, 제6항)
- ❍ 표결에서도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원재판부 의장이 최종 결정하나 반대의견을 결정문에 명시하여야 함(헌법재판소법 제45조 제7항, 제8항, 제10항)
- ❍ 결정의 선고는 공개함.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종국적이며, 그 결정의 효력은 인도네시아 영토 전역에 미침

6. 기타사항

- ❍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재판관으로 임명되겠다는 성명서를 이력서, 졸업증명서, 재산목록 및 납세자등록번호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헌법재판소의 의무 및 권한의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심판사무처(Office of the Registrar)와 일반사무처(Secretariat General)를 설치

7. 연락처

- ❍ 주소 : Mahkamah Konstitusi RI
  Jl. Medan Merdeka Barat No.6
  Jakarta Pusat 10110, Indonesia
- ❍ 전화번호 : +62 21 23529000
- ❍ 팩스번호 : +62 21 3520177
- ❍ 홈페이지 : http://www.mkri.id

※ 출처 :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인도네시아 헌법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법

(2021. 8. 작성)